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 02. 28.
일부개정 2017. 05. 10.
일부개정 2022. 05. 11.
일부개정 2026. 05.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서울法學」등 학술지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 및 연구종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서울法學」등 학술지에 참여하는 교원 및 법조인, 그밖에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규정을 제한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이 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3조(연구윤리서약)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반의 종류) 연구윤리위반은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라 함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되었거나 주된 내용이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AI 부정사용’이라 함은 AI를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연구자의 독창적 기여를 찾아 볼 수 없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26.05.26.>

제5조(저자의 윤리)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 게재나 이 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법학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저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및 논문 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동연구자 중에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논문투고 시에 이 사실을 별도로 법학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26.>

⑦ AI는 연구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최종 원고에 대한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개정 2026.05.26.>

⑧ 저자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는 AI의 생성물을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의 진위와 표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05.26.>

⑨ 저자는 AI 창작물을 저자 자신의 저작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05.26.>

제6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한 경우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의 생성물을 활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6.05.26.>

제7조(편집위원의 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해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평가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저작물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⑥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의뢰받은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자의 투고된 저작물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채 또는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수정후 게재 등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내지 기타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작성자의 동의없이 AI에 업로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저작권 등 침해 없이 논문평가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학습 데이터 활용 거부' 설정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26.>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소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여부의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본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 규정 위반에 대해 소장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소장에게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4조(제재 및 징계) ① 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학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 환수
2.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게재된 경우 해당 저작물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 목록에서 삭제
3. 향후 3년 이상 투고 금지
4.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
5.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 피조사자 및 그 소속기관에 통보
6.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인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통보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② 전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 관련기록을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한다.

제15조(연구윤리 개정)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5. 1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5. 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05. 2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